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2018누5948]

사 건 명 : 승무 중 직무의 질병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 원고1

전남 신안군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A

피 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 론 종 결 : 2019. 4. 4.

판 결 선 고 :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승무 중 직무 외 질병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4, 7, 8행, 제5면 4행의 " 새우젓 " 을 " 젓새우 " 로, 제4면 1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추가로 판단하는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인 2016. 6.경 ○○호가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판매한 금액이 종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점에 비추어 불 때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직전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였고, 장기간 출항하여 조업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갑 제1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수 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 ○○호의 위탁 판매 금액이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장기간 출항하여 조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인 2016. 6.경 ○○호가 위탁판매한 금액이 종전에 비해 급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탁판매 금액은 젓새우의 품질과 시가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2016. 6.경 위탁판매 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한편, 원고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고 젓새우를 어획하거나 선별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선원들이 수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획량이 일부 증가하였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